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30호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 업무를 함께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근무기관(근무장소)
기간제근로자	1명	○ 직업훈련교육센터 업무 ○ 산학협력단 업무 및 사업 운영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응시자격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중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우대사항

○ 직업훈련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사업 운영 유경험자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갱신 없이 근로관계 종료

나.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복무는 「근로기준법」 및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월차 제공

다. 보수(월): 2,544,990원(세전)

- 급여는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준용하여 지급

라. 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마. 후생복지: 4대보험 적용(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의 단계

분 야 별	1차 시험	2차 시험
공 통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29. ~ 10. 8.	2026. 10. 12.	2026. 10. 13.	2026. 10. 16.

※ 합격자 일정 등은 개별(유선) 통지하며, 서류검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부적합하거나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결정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항목 평가요소를 각각 A, B, C, D, F로 평가하되, 평가요소마다 점수를 부여(A 10점, B 8점, C 6점, D 4점, F 2점)
 ▸(평가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성
- 위원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F”로 평가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F”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총점)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9.(화)~10. 8.(목) ※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 수 처 :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금구리) 미래관 305호, ☏043) 730-6252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 서류전형·우대요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② **자기기술서 1부** **<별지서식 2>**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4>**

⑤ **부정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5>**

⑥ **공정채용확인서** **<별지서식 6>**

⑦ **서약서** **<별지서식 7>**

⑧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서식 8>**

⑨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학위 보유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 ·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예정일('26. 10. 14.) 기준
 -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함께 제출

※ 주당 근무시간이 40H 미만인 경우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근무월일수'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⑩ **우대요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1부**

⑪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30일 이내 <별지서식 9>의 서식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상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안내사항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730-6252)